

문 의



보도자료

2016. 6. 6(월)

> 국가보훈처 복지운영과 과장 이형남 / 시무관 장숙남 (Tel. 044-202-5631)

* 엠바고: 6.6(월) 11시 40분(행사 종료) 이후 사용

공동배포 : 국가보훈처

현충일 맞아 참전 유공자 병문안, 위로와 감사 마음 전해

- 황총리 중앙보훈병원 방문, '국가유공자 예우에 소홀함 없도록 노력할 것' 당부
- □ 황교안 국무총리는 6월 6일(월) 오전 제61회 현충일을 맞아 중앙 보훈병원(서울 강동구 둔촌동)을 방문하여 병상에 있는 국가유공자 들과 병원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다.
 - * 박승춘 국가보훈처장, 이정열 중앙보훈병원장,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시장 등 참석
- □ 황 총리는 참전 국가유공자들이 머물고 있는 개별 병실을 방문 하여, 국가유공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고, 병원생활과 치료에 불편함은 없는지 등을 물었다.
 - * 백ㅇㅇ씨(71세)는 맹호부대 소속으로 월남전 참전 중 다리 부상
 - * 이ㅇㅇ씨(69세)는 백마부대 소속으로 월남전 참전, 고엽제후유증
 - * 황ㅇㅇ씨(67세)는 군 특수임무 수행 중 목과 허리 부상
 - * 강ㅇㅇ씨(73세)는 군복무 중 동상으로 오른손 절단
 - * 강ㅇㅇ씨(72세)는 군복무 중 질병을 얻어 신장 절제

- □ 아울러 이정열 중앙보훈병원장으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2014년 1,400병상 규모로 중설·운영되고, 국내 최초로 '치료-재활-요양-연구'를 연계한 진료체계^{*}를 구축하여 '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'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은 후,
 - * 치료병동(814병상) 재활센터(187병상) 요양병원(399병상) 보훈의학연구소
 - 우수한 의료 환경과 시설이 확보된 만큼 앞으로도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유공자들의 치료와 재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의료진들에 게 당부하였다.
- □ 이날 **황 총리**는 특히, 국가유공자는 **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**하여, 국가가 **존경과 예우**로 보살펴야 할 분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,
 - 정부는 이분들의 **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예우**에 소홀함이 없도록 **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**이라고 밝혔다.
- ※ (붙임) 1. 보훈대상자 현황
 - 2.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

붙임 1 보훈대상자 현황

(2016. 4월말 기준, 단위 : 명)

	(2010, 4월일 기교, 현기 . 8)		
대 상 별	계	본 인	유 족
합 계 †	857,595	652,985	204,610
H / II ·	(50,746)	(38,338)	(12,408)
독립유공자(순국선열·애국지사)	7,457	74	7,383
전몰·전상·순직·공상군경	245,724	113,787	131,937
<u>(고엽제후유증)‡</u>	(50,746)	(38,338)	(12,408)
무공·보국수훈자	108,341	57,070	51,271
재일학도의용군인	294	30	264
4·19혁명사망·희생·공로자	827	535	292
순직·공상공무원	14,734	4,027	10,707
	17	0	17
6·18자유상이자	367	84	283
지원순직·공상군경, 지원순직·공상공무원	2,857	2,352	505
재해사망·부상군경, 재해사망·부상공무원	2,655	2,042	613
참전유공자(6·25전쟁)	138,882	138,882	0
참전유공자(월남전쟁)	205,795	205,795	0
참전유공자(6·25 및 월남)	2,833	2,833	0
고엽제후유의증	50,558	50,558	0
고엽제후유증2세	86	86	0
5·18민주유공자(사망·행불·부상·기타희생자)	4,227	3,511	716
특수임무유공자(사망·행불·부상·공로자)	3,663	3,041	622
중·장기복무제대군인	68,278	68,278	0

- 주. 제적(국적상실), 등급기준미달자, 단순수훈자, 희생자력 제외
- ↑ 합계는 등록대상별 현황의 합계. 실인원 아님. ()는 합계에 포함되지 않음
- ‡ (고엽제후유증)은 국가유공자예우법상 '전몰·전상·순직·공상군경'에 포함(중복합산 안함)
-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참조
- 참전유공자는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의거 등록된 대상자 현황

붙임 2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

○ 보훈급여금

- 보상금, 간호수당(상이 1·2급), 중상이부가수당(상이1급), 사망일시금(1,127~1,704천원)

○ 교육지원

- 수업료 등 면제 : 본인·자녀(중·고·대)
- 학습보조비 지급 : 본인·배우자(대학), 자녀(중·고)
- O 취업지원: 보훈특별고용·가점, 직업훈련, 취업수강료
- 의료지워
 - 보훈병원 : 본인 국비, 유·가족 60% 감면
 - 위탁병원 : 본인 국비,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인 위탁병원 60% 감면(비급여 및 약제비 제외)
 - ※ '12.7.1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 상이처외 질환 20%부담(보훈・위탁병원)
 - 보철구 지급
- **대부지원** : 주택, 자영사업, 생활안정 대부(연 2~3%, 300~6,000만원)

○ 기타지원

- 양로지원 : 무의탁 본인(남60세, 여55세) 및 유족(배우자, 부모)
- 보훈요양원 이용 : 급여비용의 100% 감면
- 양육지원(무의탁 미성년자녀 및 제매), 수송시설 감면(본인), 고궁 등 무료 이용
- 국립묘지(배우자 합장) 안장, 영구용 태극기, 묘비제작비 지원 ※ 단, 국립묘지는 결격사유 해당시 별도 심의

○ 타법 지워

- TV수신료 면제, 전화·이동전화·인터넷통신 요금 감면(본인)
- 주민등록·인감증명·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수료 면제, 개인택시 면허지원
- 의료급여증(저소득), 보철용차량 지방세 감면,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, LPG사용 세금 인상분 지원, 주차료 감면,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
- 국내선 항공기 50%, 수권 유족 30% 할인
- 병역혜택(상이6급 이상 전·공상군인의 자녀, 형제 중 1인)